

개정 전	개정 후
<p><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분양·임대용 부동산§59②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50%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p>☞ 감면 종료</p>
<p><⑦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자의 직접사용 부동산§59③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취득세 50%, 재산세 50%(3년)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p>☞ 감면 종료</p>
<p><⑧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§60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취득세 50% ※ (전통시장) 취득세 75%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p>☞ 현행 3년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취득세 50% ※ (전통시장) 취득세 75%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<p><⑨ 지방중소기업센터의 직접사용 부동산 §60④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50%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p>☞ 현행 3년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50%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
< 개정내용 >

- (①)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의 경우 정부 신용보증 공공
기관* 및 지자체의 타 출연기관**과의 형평 고려 감면 종료
 - *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감면 종료('14)
 - ** 「지특법」§58의2③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감면으로 대체 가능
(취·재 50% × 지자체 투자 비율)
- (②)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 정상화 지원을 위해 현행
감면 2년 연장